학회 유관 학술활동 지원 및 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 : 2019. 01. 0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회와 연관이 있는 학술활동 행사의 지원 범위와 내용을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분과활동 및 학회원의 학술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간접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지부 또는 분과회의 사업계획에 명시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행사

본 학회의 분과 혹은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주관·주최하는 학술대회로서 분과위원장 또는 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행사로서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행사

가. 행사의 목적과 내용이 정관에 명시된 본회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나. 주최자와 대부분의 참가자가 한국전기화학회 회원인 행사

제3조 (관리간접비 징수율) 관리간접비는 주관·주최하는 기관 및 행정적 지원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징수한다. 다만 파견된 사무직원의 숙식은 해당 학술대회에서 부담한다.

1. 학회 분과가 단독으로 개최하거나 타 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의 경우

가. 사무국 인력 지원 경비 1인 1일에 대하여 250,000원x지원일수

나.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준비금 사전지원 가능

2. 분과가 아닌 기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의 경우

가. 학회가 수납을 대행하는 참가비의 10%

나. 사무국 인력 지원 경비 1인 1일에 대하여 400,000원x지원일수

다.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준비금 사전지원 가능

제 4조 (사무국의 지원 내용)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사전협의에 의해 수정 및 추가할 수 있다.

1. 참가비 및 광고비 수납 대행

※ 참가비는 반드시 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 광고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10%)는 별도 / 한국전기화학회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 학회 명의의 영수증 및 명세서 양식 제공 지원

2. 한국전기화학회관련 매체(홈페이지, 이메일)를 통한 홍보 지원

3. 행사 진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지원

제5조 (잉여금 및 손실금 처리) 제 3조 1항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잉여금의 경우에는 본회와 분과회가 6:4의 비율로 분배하며,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과회가 보유하고 있는 운영비에서 충당한다. 또한 제 3조 2항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잉여금의 경우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전액 본회에 귀속되거나, 기관(학교, 연구소 및 기타 비영리기관 등 본회가 인정하는 단체)의 공문에 따라 잉여금을 협의에 의하여 일정비율로 기부, 승계하고,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회가 부담하지 않는다.

제6조 (행사주최자의 의무)

1. 행사 관련 안내 및 홍보자료 등에 (사)한국전기화학회를 주최 또는 후원 기관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단 2조 2항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 내용과 사무국의 지원 요청 내역을 명시한 계획서를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사 목적, 내용, 주최자, 예산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3. 행사 및 결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행사 결과, 결산 내역이 포함된 종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제 5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기타사항)

1. 이행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행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

2.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과 동시에 이후의 행사에 대해 적용한다.